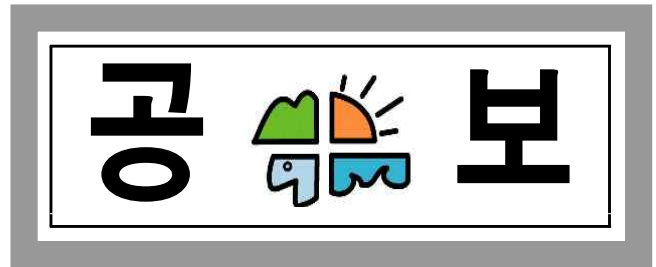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84호 2016년 3월 25일(금)

공 고

○ 속초시 공인 등록사항 공고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415, FAX : 639-2106)

공 고

속초시 공인 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) 및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25일

속 초 시 장

1.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사유

— 통합민원발급기 인증기 사용

2. 전자이미지 인영 : 1개

구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최초사용/폐기 년월일	인증기계기번호
전자 이미지	노학동장인 (노학동인증기전용3호)		훈민정음체 가로(2.4cm)× 세로(2.4cm)	2016.03.25	GT5000-1249